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산림녹지과	16,531,148	13,142,857	3,388,291	
2000 사회개발비	5,566,660	3,576,593	1,990,067	[국 141,323] [균 200,000] [도 347,500]
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	5,566,660	3,576,593	1,990,067	[국 141,323] [균 200,000] [도 347,500]
2230 공원 · 녹지관리	5,566,660	3,576,593	1,990,067	[국 141,323] [균 200,000] [도 347,500]
2231 도시공원관리	4,963,593	3,111,644	1,851,949	[국 141,323] [균 200,000] [도 112,500]
100 경상예산	307,158	295,707	11,451	[국 29,196]
110 인건비	231,598	213,940	17,658	[국 29,196]
101 인건비	231,598	213,940	17,658	
	13,925	18,000	△4,075	09 일용인부임 ○ 도시녹지관리원 13,925,000 X 1명 = 13,925 (국 9,808) (시 4,117)
	217,673	195,940	21,733	10 일시사역인부임 ○ 가로수정비등 사후관리 인부임 34,500 X 3명 X 5일 X 4주 X 10월 = 20,700 ○ 가로화단.쌈지공원 정비등 사후관리 인부임 34,500 X 2명 X 5일 X 4주 X 10월 = 13,800 ○ 배롱나무 식재지 풀베기 인부임 ㅇ 특수 66,580 X 10명 X 10일 X 2회 = 13,316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ㅇ 보통 34,500 X 5명 X 15일 X 2회 =	5,175
				○ 강변로 피라칸사스 식재지 전지인부임	
				ㅇ 특수 66,580 X 4명 X 8일 X 2회 =	4,262
				ㅇ 보통 34,500 X 3명 X 8일 X 2회 =	1,656
				○ 가로화단.쌈지공원 제초작업 인부임	
				34,500 X 9명 X 10일 X 6회 =	18,630
				○ 가로수 및 조경수 시비작업 인부임	
				34,500 X 10명 X 10일 X 1회 =	3,450
				○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방제 인부임	
				34,500 X 4명 X 6일 X 4회 =	3,312
				○ 가로수잠복소 및 월동방지작업 인부임	
				34,500 X 8명 X 10일 X 2회 =	5,520
				○ 철쭉단지 제초작업 인부임	
				34,500 X 10명 X 5일 X 3회 =	5,175
				○ 일시사역인부 부상치료비 296,000 X 10명 =	2,960
				○ 도시공원 및 녹지대관리 인부임	
				34,500 X 9명 X 6일 X 4주 X 12월 =	89,424
				○ 등산로보수 및 유지관리 인부임	
				34,500 X 2명 X 20개소 X 2회 =	2,760
				○ 숲길조사원 인부임 1,248,100 X 2명 X 10월 =	24,962
				(국	17,578)
				(시	7,384)
				○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495,000 X 2명 X 2회 =	1,980
				(국	1,395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					(시	585)
				○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피복비	295,500 X 2명 =	591
					(국	415)
					(시	176)
120 경상적경비	75,560	81,767	△6,207			
201 일반운영비	51,183	45,421	5,762			
	51,183	45,421	5,762	01 일반운영비		
				○ 일반수용비	=	11,618
				○ 공공요금 및 제세	=	26,240
				○ 운영수당	=	4,000
				○ 피 복 비	=	120
				○ 연 료 비	=	756
				○ 시설장비유지비	=	8,449
202 여비	5,545	3,834	1,711			
	5,545	3,834	1,711	01 국내여비		
				○ 여비 총액	=	5,545
301 일반보상금	18,832	32,512	△13,680			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15,832	29,512	△13,680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	
				○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	
				ㅇ 봉 급 68,470 X 6명 X 12월 =	4,930
				ㅇ 급 식 비 4,000 X 23일 X 6명 X 12월 =	6,624
				ㅇ 교 통 비 1,780 X 23일 X 6명 X 12월 =	2,948
				ㅇ 기타경비(제복등) 60,000 X 6명 X 2회 =	720
				ㅇ 공무상 부상치료비 305,000 X 2회 =	610
	3,000	3,000	0	12 기타보상금	
				○ 민간인 상해 치료비 500,000 X 3명 X 2회 =	3,000
200 사업예산	4,656,435	2,815,937	1,840,498	[국 112,127] [균 200,000] [도 112,500]	
210 보조사업	767,600	774,928	△7,328	[국 112,127] [균 200,000] [도 112,500]	
202 여비	1,600	0	1,600		
	1,600	0	1,600	01 국내여비	
				○ 숲길조사 현지확인 여비 20,000 X 2명 X 4일 X 10월 =	1,600
				(국	1,127)
				(시	473)
206 재료비	7,000	8,928	△1,928		
	7,000	8,928	△1,928	00 재료비	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				○ 가로수 잠복소 구입	3,500 X 2,000개 =	7,000
					(도	2,100)
					(시	4,900)
401 시설비및부대비	759,000	766,000	△7,000			
	754,044	761,018	△6,974	01 시설비		
				○ 가로수 식재	40,549,000 X 8.4㎞ =	340,612
					(국	103,000)
					(도	48,000)
					(시	189,612)
				○ 도시숲 조성사업		
				ㅇ 시설비	192,200,000 X 2개소 =	384,400
					(균	200,000)
					(도	60,000)
					(시	124,400)
				ㅇ 실시설계비	384,400,000 X 3.39/100 =	13,032
					(시	13,032)
				○ 도시림 실태조사	16,000,000 X 1식 =	16,000
					(국	8,000)
					(도	2,400)
					(시	5,600)
	4,956	4,982	△26	03 시설부대비		
				○ 가로수식재 추진부대비	340,612,000 X 0.701/100 =	2,388
					(시	2,388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				○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부대비		
					384,400,000 X 0.668/100 =	2,568
					(시	2,568)
220 자체사업	3,888,835	2,041,009	1,847,826			
206 재료비	48,200	51,000	△2,800			
	48,200	51,000	△2,800	00 재료비		
				○ 재료비 총액	=	48,200
401 시설비및부대비	3,834,435	1,786,009	2,048,426			
	3,807,940	1,775,529	2,032,411	01 시설비		
				○ 가로수 식재	62,500,000 X 4개소 =	250,000
				○ 가로수 수형조절(전정)	50,000,000 X 2개소 =	100,000
				○ 보차도 경계녹화		
				ㅇ 시설비	47,500,000 X 4개소 =	190,000
				ㅇ 실시설계비	190,000,000 X 5.11/100 =	9,709
				○ 담장허물기사업		
				ㅇ 시설비	95,000,000 X 2개소 =	190,000
				ㅇ 실시설계비	190,000,000 X 4.08/100 =	7,752
				○ 학교숲 조성사업		
				ㅇ 시설비	50,000,000 X 2개소 =	100,000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				ㅇ 실시설계비	100,000,000 X 5.11/100 =	5,110
				○ 열린공간 녹지 조성사업		
				ㅇ 시설비	740,000,000 X 1개소 =	740,000
				ㅇ 실시설계비	740,000,000 X 2.99/100 =	22,126
				○ 가로화단(쌈지공원)조성사업		
				ㅇ 시설비	45,000,000 X 3개소 =	135,000
				ㅇ 실시설계비	135,000,000 X 5.11/100 =	6,899
				○ 벽면녹화	30,000,000 X 1개소 =	30,000
				○ 옥상녹화		
				ㅇ 시설비	50,000,000 X 1개소 =	50,000
				ㅇ 실시설계비	50,000,000 X 5.46/100 =	2,730
				○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	140,000,000 X 1식 =	140,000
				○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		
				ㅇ 시설비	192,000,000 X 3개소 =	576,000
				ㅇ 실시설계비	576,000,000 X 3.39/100 =	19,527
				○ 등산로정비 및 유지관리		
				ㅇ 시설비	94,200,000 X 1식 =	94,200
				ㅇ 실시설계비	94,200,000 X 5.11/100 =	4,814
				○ 매산공원 조성사업	496,000,000 X 1식 =	496,000
				○ 운동공원 조성사업		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				ㅇ 시설비	191,000,000 X 1식 =	191,000
				ㅇ 실시설계비	191,000,000 X 4.08/100 =	7,793
				○ 신도심 간선가로변 녹지조성		
				ㅇ 시설비	80,000,000 X 1식 =	80,000
				ㅇ 실시설계비	80,000,000 X 5.11/100 =	4,088
				ㅇ 토지보상비	215,192,000 X 1식 =	215,192
				○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및 보수	140,000,000 X 1식 =	140,000
	26,495	10,480	16,015	03 시설부대비		
				○ 가로수식재 추진부대비	250,000,000 X 0.72/100 =	1,800
				○ 가로수 수형조절(전정)추진부대비	100,000,000 X 0.9/100 =	900
				○ 보.차도 경계녹화 추진부대비	190,000,000] X 0.9/100 =	1,710
				○ 담장허물기사업 추진부대비	190,000,000 X 0.72/100 =	1,368
				○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부대비	100,000,000 X 0.9/100 =	900
				○ 열린공간 녹지조성사업 추진부대비	740,000,000 X 0.63/100 =	4,662
				○ 가로화단(쌈지공원)조성사업 추진부대비	135,000,000 X 0.9/100 =	1,215
				○ 벽면녹화 추진부대비	30,000,000 X 1.08/100 =	324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○ 옥상녹화 추진부대비 50,000,000 X 1.08/100 = 540
				○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추진부대비 140,000,000 X 0.72/100 = 1,008
				○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부대비 576,000,000 X 0.72/100 = 4,148
				○ 등산로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부대비 94,200,000 X 0.9/100 = 848
				○ 매산공원 조성사업 추진부대비 496,000,000 X 0.72/100 = 3,572
				○ 운동공원 조성사업 추진부대비 191,000,000 X 0.72/100 = 1,376
				○ 신도심간선 가로변 녹지조성 추진부대비 80,000,000 X 0.9/100 = 720
				○ 죽도봉 상수도가압장설치 추진부대비 49,000,000 X 1.08/100 = 529
				○ 도시공원시설물정비 및 보수 추진부대비 140,000,000 X 0.625/100 = 875
405 자산취득비	6,200	4,000	2,200	
	6,200	4,000	2,2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
				○ 동력고지 절단기 2,000,000 X 2대 = 4,000
				○ 기계톱 600,000 X 2대 = 1,200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예초기 500,000 X 2대 =	1,000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2232 조계산도립공원관리	603,067	464,949	138,118	[도 235,000]
100 경상예산	158,115	175,048	△16,933	[도 87,523]
110 인건비	158,115	175,048	△16,933	[도 87,523]
101 인건비	158,115	175,048	△16,933	
	3,120	3,120	0	03 정액급식비 ○ 도립공원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130,000 X 2명 X 12월 = 3,120 (도 1,560) (시 1,560)
	3,120	3,120	0	04 교통보조비 ○ 도립공원 청원경찰 교통보조비 130,000 X 2명 X 12월 = 3,120 (도 1,560) (시 1,560)
	3,318	3,318	0	05 명절휴가비 ○ 도립공원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26,544,000 X 1/12 X 0.75 X 2회 = 3,318 (도 1,659) (시 1,659)
	5,530	5,530	0	06 가계지원비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				○ 도립공원 청원경찰 가계지원비		
					26,544,000 X 1/12 X 250% =	5,530
					(도	2,765)
					(시	2,765)
	1,844	1,844	0	07 연가보상비		
				○ 도립공원 청원경찰 연가보상비	26,544,000 X 20/288 =	1,844
					(도	922)
					(시	922)
	50,982	50,982	0	08 기타직보수		
				○ 청원경찰 보수		
				ㅇ 봉 급	1,106,000 X 2명 X 12월 =	26,544
					(도	13,272)
					(시	13,272)
				ㅇ 처우개선비	26,544,000 X 3/100 =	796
					(도	398)
					(시	398)
				ㅇ 상여금		
				- 기말수당	26,544,000 X 2/12 =	4,424
					(도	2,212)
					(시	2,212)
				- 정근수당	26,544,000 X 1.8/12 =	3,982
					(도	1,991)
					(시	1,991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ㅇ 봉급조정 수당	26,544,000 X 1/12 X 25% = 553
					(도 276)
					(시 277)
				ㅇ 초과근무 수당	
				- 시간외근무수당	6,919 X 2명 X 40시간 X 12월 = 6,642
					(도 3,321)
					(시 3,321)
				- 휴일근무수당	53,043 X 2명 X 2일 X 12월 = 2,546
					(도 1,273)
					(시 1,273)
				ㅇ 정액수당	
				- 가족수당	
				· 배 우 자	30,000 X 2명 X 12월 = 720
					(도 360)
					(시 360)
				· 부양가족	20,000 X 5명 X 12월 = 1,200
					(도 600)
					(시 600)
				- 자녀학비 보조수당	
				· 고등학교	356,000 X 2명 X 4회 = 2,855
					(도 1,428)
					(시 1,427)
				- 장기근속 수당(10 - 15년)	60,000 X 1명 X 12월 = 720
					(도 360)
					(시 360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	77,853	94,786	△16,933	09 일용인부임		
				○ 도립공원관리 인부임		
				ㅇ 환경미화원	23,500 X 1명 X 326일 =	7,661
					(도	7,661)
				ㅇ 300일 인부임	13,523,000 X 2명 =	27,046
					(도	13,523)
					(시	13,523)
				ㅇ 상여금		
				- 기말수당	7,661,000 X 4/12 =	2,554
					(도	2,554)
				- 정근수당	7,661,000 X 1/12 X 100% X 2회 =	1,278
					(도	1,278)
				ㅇ 체력단련비	7,661,000 X 1/12 X 50% X 5회 =	1,595
					(도	1,595)
				ㅇ 특수업무 수당	90,000 X 3명 X 12월 =	3,240
					(도	1,620)
					(시	1,620)
				ㅇ 작업장려 수당	70,000 X 3명 X 12월 =	2,520
					(도	1,260)
					(시	1,260)
				ㅇ 가족수당		
				- 배우자	30,000 X 3명 X 12월 =	1,080
					(도	540)
					(시	540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- 부양가족	20,000 X 6명 X 12월 = 1,440
					(도 720)
					(시 720)
				ㅇ 정액급식비	80,000 X 1명 X 12월 = 960
					(도 960)
				ㅇ 가계보조비	80,000 X 1명 X 12월 = 960
					(도 960)
				ㅇ 교통보조비	120,000 X 1명 X 12월 = 1,440
					(도 1,440)
				ㅇ 급 량 비	70,000 X 1명 X 12월 = 840
					(도 662)
					(시 178)
				ㅇ 명절휴가비	7,661,000 X 1/12 X 0.75 X 2회 = 957
					(도 478)
					(시 479)
				ㅇ 시간외근무수당	11,000 X 3명 X 326일 = 11,149
					(도 5,575)
					(시 5,574)
				ㅇ 휴일근무수당	45,600 X 3명 X 2일 X 12월 = 3,284
					(도 1,642)
					(시 1,642)
				ㅇ 년차유급휴가수당	30,400 X 3명 X 19일 = 1,733
					(도 866)
					(시 867)
				ㅇ 근속가산금	312,000 X 1명 X 12월 = 3,744
					(도 1,872)
					(시 1,872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ㅇ 자녀학비 보조수당	
				- 고등학교 261,750 X 1명 X 4회 =	1,047
				(도	523)
				(시	524)
				ㅇ 도립공원 관리요원 피복비	
				- 작업복 100,000 X 3명 X 2회 =	600
				(도	300)
				(시	300)
				- 작업화 60,000 X 3명 X 2착 =	360
				(도	180)
				(시	180)
				- 우 의 45,000 X 3명 X 1착 =	135
				(도	68)
				(시	67)
				ㅇ 연금 및 보험료 기관부담금	
				22,983,000 X 9.7 / 100 =	2,230
				(도	1,115)
				(시	1,115)
	12,348	12,348	0	10 일시사역인부임	
				○ 도립공원 시설물 도색인부임	
				34,500 X 3명 X 3일 X 3개소 =	932
				(도	466)
				(시	466)
				○ 도립공원 등산로 유지관리 인부임	
				52,230 X 6명 X 3일 X 5개소 =	4,700
				(도	2,350)
				(시	2,350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○ 도립공원 야생화단지 잡초제거 작업 인부임
				34,500 X 6명 X 6일 X 3회 = 3,726
				(도 1,863)
				(시 1,863)
				○ 도립공원 등산로변 풀베기작업 인부임
				52,230 X 8명 X 5ha X 1회 = 2,090
				(도 1,045)
				(시 1,045)
				○ 간 식 비 2,500 X 15일 X 24명 = 900
				(도 450)
				(시 450)
200 사업예산	444,952	289,901	155,051	[도 147,477]
210 보조사업	294,952	89,897	205,055	[도 147,477]
201 일반운영비	57,934	57,934	0	
	57,934	57,934	0	01 일반운영비
				○ 주차장 관리용 물품구입 50,000 X 2회 X 20개 = 2,000
				(도 1,000)
				(시 1,000)
				○ 공원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
				1,676 X 3매 X 2개소 X 365일 = 3,671
				(도 1,836)
				(시 1,835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공원내 금지행위 안내등 홍보물 제작	
				180,000 X 10매 X 2회 =	3,600
				(도	1,800)
				(시	1,800)
				○ 도립공원 업무용 사진제작	
				ㅇ 필름 30,000 X 12박스 =	360
				(도	180)
				(시	180)
				ㅇ 인화(3 X 5) 200 X 2,500매 =	500
				(도	250)
				(시	250)
				ㅇ 인화(5 X 7) 1,000 X 400매 =	400
				(도	200)
				(시	200)
				○ 도립공원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82,000 X 3개소 =	546
				(도	273)
				(시	273)
				○ 도립공원 먹는물 소독약품 구입	
				40,000 X 2개소 X 3회 =	240
				(도	120)
				(시	120)
				○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	
				4,500 X 100속 X 4회 X 4개소 =	7,200
				(도	3,600)
				(시	3,600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100,000 X 4개소 X 4회 =	1,600
				(도	800)
				(시	800)
				○ 조계산등산로변 수목 및 야생화 표찰 제작	
				15,000 X 200개 =	3,000
				(도	1,500)
				(시	1,500)
				○ 선암사 주차장 감열테이프 구입(주차영수용지)	
				100,000 X 4박스 =	400
				(도	200)
				(시	200)
				○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교체 800,000 X 12개소 =	9,600
				(도	4,800)
				(시	4,800)
				○ 도립공원 방위표지판 설치 2,000,000 X 3개소 =	6,000
				(도	3,000)
				(시	3,000)
				○ 도립공원 시설물 사용 전기료 50,000 X 6개소 X 12월 =	3,600
				(도	1,800)
				(시	1,800)
				○ 청원경찰 제복구입 130,000 X 2명 X 2회 =	520
				(도	260)
				(시	260)
				○ 불법행위단속 및 질서계도 급량비	
				5,000 X 8명 X 4일 X 12월 =	1,920
				(도	960)
				(시	960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도립공원 안내초소 난방비	
				720 X 8시간 X 90일 X 2개소 =	1,037
				(도	519)
				(시	518)
				○ 공중화장실 변기 수리비 100,000 X 4개소 X 6회 =	2,400
				(도	1,200)
				(시	1,200)
				○ 공중화장실 동파방지용 히터 보수관리	
				275,000 X 4대 X 2회 =	2,200
				(도	1,100)
				(시	1,100)
				○ 음수대등 시설물 보수관리비 100,000 X 3개소 X 3회 =	900
				(도	450)
				(시	450)
				○ 공원관리용 예취기 유지비(수리,유류)	
				200,000 X 2대 X 2회 =	800
				(도	400)
				(시	400)
				○ 공원급수용 전기모터 및 지하 수중모터 수리관리	
				300,000 X 5개소 X 2회 =	3,000
				(도	1,500)
				(시	1,500)
				○ 공원 가로등 수리비 120,000 X 8개소 X 2회 =	1,920
				(도	960)
				(시	960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○ 공원순찰용 무전기 관리비
				ㅇ 정기검사 수수료 24,000 X 5대 = 120
				(도 60)
				(시 60)
				ㅇ 수리비 30,000 X 5대 = 150
				(도 75)
				(시 75)
				ㅇ 밧데리 구입 50,000 X 5대 = 250
				(도 125)
				(시 125)
202 여비	6,058	6,058	0	
	6,058	6,058	0	01 국내여비
				○ 도립공원 시설물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
				10,000 X 5명 X 4일 X 12월 = 2,400
				(도 1,200)
				(시 1,200)
				○ 도립공원관리계획 수립자료 조사여비
				49,900 X 2명 X 3일 X 4회 = 1,198
				(도 599)
				(시 599)
				○ 도립공원 보조금 정산 합동집무 41,200 X 1명 X 4일 = 165
				(도 83)
				(시 82)
				○ 도립공원 시설업무 담당자 교육 41,200 X 3명 X 4일 = 495
				(도 247)
				(시 248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○ 도립공원시설물 설치 대상지 조사 여비 10,000 X 5명 X 3일 X 12월 = 1,800 (도 900) (시 900)
204 직무수행경비	3,720	3,720	0	
	2,520	2,520	0	02 직급보조비 ○ 도립공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105,000 X 2명 X 12월 = 2,520 (도 1,260) (시 1,260)
	1,200	1,200	0	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○ 도립공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50,000 X 2명 X 12월 = 1,200 (도 600) (시 600)
206 재료비	800	800	0	
	800	800	0	00 재료비 ○ 도립공원 시설물도색용 재료구입 200,000 X 4개소 X 1회 = 800 (도 400) (시 400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301 일반보상금	24,440	19,385	5,055			
	24,440	19,385	5,055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		
				○ 봉급	60,000 X 10명 X 12월 =	7,200
					(도	3,600)
					(시	3,600)
				○ 급식비	75,000 X 10명 X 12월 =	9,000
					(도	4,500)
					(시	4,500)
				○ 교통비	40,000 X 10명 X 12월 =	4,800
					(도	2,400)
					(시	2,400)
				○ 기말수당	7,200,000 X 4/10 X 50% =	1,440
					(도	720)
					(시	720)
				○ 기타경비(제복등)	100,000 X 10명 X 2회 =	2,000
					(도	1,000)
					(시	1,000)
401 시설비및부대비	200,000	0	200,000			
	198,793	0	198,793	01 시설비		
				○ 도립공원 야외(생태체험)학습장 조성		
				ㅇ 시설비	191,000,000 X 1식 =	191,000
					(도	100,000)
					(시	91,000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ㅇ 실시설계비 191,000,000 X 4.08/100 = 7,793
				(시 7,793)
	1,207	0	1,207	03 시설부대비
				○ 도립공원 야외(생태체험)학습장조성 추진부대비
				191,000,000 X 0.63/100 = 1,207
				(시 1,207)
405 자산취득비	2,000	2,000	0	
	2,000	2,000	0	01 자산및물품취득비
				○ 기계톱 600,000 X 2대 = 1,200
				(도 600)
				(시 600)
				○ 예취기 400,000 X 2대 = 800
				(도 400)
				(시 400)
220 자체사업	150,000	200,004	△50,004	
401 시설비및부대비	150,000	200,004	△50,004	
	148,719	198,306	△49,587	01 시설비
				○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
				ㅇ 시설비 47,000,000 X 1식 = 47,000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				ㅇ 실시설계비	47,000,000 X 5.46/100 =	2,566
				○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		
				ㅇ 시설비	94,332,000 X 1식 =	94,332
				ㅇ 실시설계비	94,332,000 X 5.11/100 =	4,821
	1,281	1,698	△417	03 시설부대비		
				○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	47,000,000 X 1.08/100 =	434
				○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	94,332,000 X 0.9/100 =	847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3000 경제개발비	10,964,488	9,566,264	1,398,224	[국 4,235,946] [균 1,534,000] [도 849,777]
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	10,964,488	9,566,264	1,398,224	[국 4,235,946] [균 1,534,000] [도 849,777]
3310 산림자원개발	10,964,488	9,566,264	1,398,224	[국 4,235,946] [균 1,534,000] [도 849,777]
3311 산림행정	10,964,488	9,566,264	1,398,224	[국 4,235,946] [균 1,534,000] [도 849,777]
100 경상예산	1,669,321	970,849	698,472	[국 892,338] [도 147,960]
110 인건비	1,578,049	888,169	689,880	[국 892,338] [도 147,960]
101 인건비	1,578,049	888,169	689,880	
	72,821	71,046	1,775	02 수당 ○ 시간외근무수당 7,326 X 21명 X 25시간 X 12월 = 46,154 ○ 산불비상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(1 - 5월, 11.12월) 7,326 X 7명 X 8시간 X 65일 = 26,667
	3,877	3,530	347	08 기타직보수 ○ 시간외근무수당(산림보호직,청원경찰) 6,461 X 2명 X 25시간 X 12월 = 3,877
	19,221	13,982	5,239	09 일용인부임 ○ 도유림 순산원 인부임(1명) = 17,357 (도 9,610) (시 7,747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연금 및 보험금 기관부담금 (시비 1,864)	
				19,221,000 X 9.7/100 =	1,864
	1,482,130	799,611	682,519	10 일시사역인부임	
				○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 34,500 X 8명 X 5회 =	1,380
				○ 산불예방 및 감시초소 인부임 34,500 X 8명 X 187일 =	51,612
				○ 일시사역인부 부상치료비 1,200,000 X 1명 =	1,200
				○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(산재보험 포함)	
				40,000 X 44명 X 140일 =	246,400
				(국	73,920)
				(도	51,744)
				(시	120,736)
				○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250,000 X 4명 =	1,000
				(국	300)
				(도	210)
				(시	490)
				○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2,450,000 X 4회 =	9,800
				(국	2,940)
				(도	2,058)
				(시	4,802)
				○ 산림보호 사회적 일자리창출 35,000 X 26명 X 270일 =	245,700
				(국	171,990)
				(시	73,710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	12,397,000 X 1명 = 12,397
					(국 5,153)
					(도 1,955)
					(시 5,289)
				○ 속효성방제 인부임	99,600 X 20ha = 1,992
					(국 902)
					(도 327)
					(시 763)
				○ 소나무재선충 인턴사원	3,466,340 X 3명 = 10,399
					(국 7,280)
					(도 936)
					(시 2,183)
				○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	41,220 X 250본 X 1/2 = 5,153
					(국 3,607)
					(도 464)
					(시 1,082)
				○ 내화수림대조성 인부임	2,437,750 X 4회 = 9,751
					(국 4,875)
					(도 1,463)
					(시 3,413)
				○ 공공산림 숲가꾸기 인부임	1,579,747 X 51명 X 10월 = 805,671
					(국 563,970)
					(도 72,510)
					(시 169,191)
				○ 공공산림 숲가꾸기 교육훈련비	489,176 X 51명 = 24,948
					(국 24,948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				○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	1,664,100 X 2명 X 10월 =	33,282
					(국	22,721)
					(도	3,169)
					(시	7,392)
				○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교육훈련비		
					320,000 X 2명 X 3회 =	1,920
					(국	1,920)
				○ 산불방화선 사후관리	1,300,000 X 3㎞ =	3,900
					(도	1,170)
					(시	2,730)
				○ 목재파쇄기운영 인부임	312,500 X 50일 =	15,625
					(국	7,812)
					(도	2,344)
					(시	5,469)
120 경상적경비	91,272	82,680	8,592			
201 일반운영비	53,148	53,148	0			
	53,148	53,148	0	01 일반운영비		
				○ 일반수용비	=	17,794
				○ 공공요금 및 제세	=	3,345
				○ 급 량 비	=	8,800
				○ 연 료 비	=	2,342
				○ 시설장비 유지비	=	10,610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				○ 차량선박비		= 10,257
202 여비	29,975	21,063	8,912			
	29,975	21,063	8,912	01 국내여비		
				○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	100,000 X 21명 X 12월	= 25,200
				○ 여비 총액		= 4,775
203 업무추진비	5,200	5,200	0			
	1,000	1,000	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	
				○ 산불예방활동 추진		= 1,000
	4,200	4,200	0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		
				○ 부서운영 업무추진비(21명)	350,000 X 12월	= 4,200
301 일반보상금	2,699	3,019	△320			
	699	699	0	10 행사실비보상금		
				○ 임업후계자 대회참석	49,900 X 7명 X 2일	= 699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2,000	2,320	△320	12 기타보상금 ○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유공자 표창(민간인) 50,000 X 4명 X 1회 = 200 ○ 제5회 산불조심 어린이 글짓기 입선자 표창 50,000 X 19명 X 1회 = 950 ○ 산불조심 어린이 글짓기 심사비 450,000 X 1회 = 450 ○ 산림사법(산불등)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 200,000 X 2명 X 1회 = 400
303 포상금	250	250	0	
	250	250	0	00 포상금 ○ 포상금 총액 = 250
200 사업예산	9,295,167	8,595,415	699,752	[국 3,343,608] [균 1,534,000] [도 701,817]
210 보조사업	8,520,167	8,190,415	329,752	[국 3,343,608] [균 1,534,000] [도 701,817]
201 일반운영비	107,676	157,407	△49,731	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107,676	157,407	△49,731	01 일반운영비
				○ 일반수용비
				ㅇ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제거 비품구입(5종)
				939,000 X 1회 = 939
				(국 658)
				(도 84)
				(시 197)
				ㅇ 산림보호 사회적일자리창출 비품구입(5종)
				5,239,250 X 4회 = 20,957
				(국 14,670)
				(시 6,287)
				ㅇ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개인작업도구 및 유류대
				880,000 X 2회 = 1,760
				(국 528)
				(도 370)
				(시 862)
				ㅇ 산불개인진화장비 300,290 X 98점 = 29,429
				(국 8,829)
				(도 6,180)
				(시 14,420)
				ㅇ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4,500 X 250ℓ = 1,125
				(국 338)
				(도 236)
				(시 551)
				ㅇ 공공산림 숲가꾸기 물품구입 1,500,000 X 1식 = 1,500
				(국 1,050)
				(도 135)
				(시 315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ㅇ 산불예방 경고판	1,500 X 1,200개 = 1,800
					(도 540)
					(시 1,260)
				○ 피복비	
				ㅇ 산불방지종사원 피복비	200,000 X 50착 = 10,000
					(국 3,000)
					(도 2,100)
					(시 4,900)
				ㅇ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	200,000 X 69착 = 13,800
					(도 4,140)
					(시 9,660)
				○ 급량비	
				ㅇ 산불진화 급식비	5,000 X 875명 = 4,376
					(국 1,313)
					(도 919)
					(시 2,144)
				○ 임차료	
				ㅇ 경제수조림 일반	37,145 X 110ha = 4,086
					(국 2,860)
					(도 368)
					(시 858)
				ㅇ 리기다갱신 조림	37,148 X 215ha = 7,987
					(국 3,994)
					(도 1,198)
					(시 2,795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				ㅇ 수원함양 조림	20,640 X 50ha =	1,032
					(국	722)
					(도	93)
					(시	217)
				○ 시설장비유지비		
				ㅇ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	5,000,000 X 1개소 =	5,000
					(국	1,500)
					(도	1,050)
					(시	2,450)
				ㅇ 목재파쇄기 운영 유류대	102,236 X 38일 =	3,885
					(국	1,942)
					(도	583)
					(시	1,360)
202 여비	2,970	5,470	△2,500			
	2,970	5,470	△2,500	01 국내여비		
				○ 산불진화출동비	10,000 X 297명 =	2,970
					(국	891)
					(도	624)
					(시	1,455)
206 재료비	35,790	3,300	32,490			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	35,790	3,300	32,490	00 재료비		
				○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	749,000 X 2대 =	1,498
					(국	750)
					(도	224)
					(시	524)
				○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	30,000 X 8대 =	238
					(국	120)
					(도	35)
					(시	83)
				○ 밤나무 토양개량	282,490 X 94ha =	26,554
					(국	21,244)
					(시	5,310)
				○ 칡 채취기	300,000 X 25 =	7,500
					(도	2,250)
					(시	5,250)
301 일반보상금	111,595	112,377	△782			
	111,595	111,477	118	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		
				○ 산림감시공익요원 보상금	2,032,310 X 35명 =	71,131
					(도	21,335)
					(시	49,796)
				○ 사망 및 장애보상금	1,124,000 X 1명 X 36배 =	40,464
					(도	12,140)
					(시	28,324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307 민간이전	4,600	5,500	△900			
	4,600	5,500	△900	02 민간경상보조금		
				○ 산림조합 육성	4,600,000 X 1개소 =	4,600
					(국	2,300)
					(시	2,300)
401 시설비및부대비	4,563,619	4,444,035	119,584			
	4,366,481	4,305,366	61,115	01 시설비		
				○ 솔잎혹파리 나무주사	266,060 X 50ha =	13,303
					(국	8,449)
					(도	1,455)
					(시	3,399)
				○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	486,000 X 20ha =	9,720
					(국	6,297)
					(도	1,027)
					(시	2,396)
				○ 임도신설		
				ㅇ 시설비	118,000,000 X 1㎞ =	118,000
					(균	94,400)
					(시	23,600)
				ㅇ 실시설계비	118,000,000 X 5.11/100 =	6,030
					(균	4,824)
					(시	1,206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임도구조개량	
				ㅇ 시설비	155,000,000 X 1㎞ = 155,000
					(균 124,000)
					(시 31,000)
				ㅇ 실시설계비	155,000,000 X 5/100 = 7,750
					(균 6,200)
					(시 1,550)
				○ 임도보수	
				ㅇ 시설비	4,571,430 X 3.5㎞ = 16,000
					(균 12,800)
					(시 3,200)
				○ 경제수일반 조림	240,390 X 110㏊ = 26,443
					(국 10,402)
					(도 4,494)
					(시 11,547)
				○ 리기다갱신 조림	162,646 X 215㏊ = 34,969
					(국 23,541)
					(도 6,861)
					(시 4,567)
				○ 생태(맹아)조림	180,318 X 22㏊ = 3,967
					(국 3,197)
					(도 131)
					(시 639)
				○ 수원함양 조림	349,660 X 50㏊ = 17,483
					(국 7,639)
					(도 4,055)
					(시 5,789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	459,214 X 28ha = 12,858
					(국 9,001)
					(도 1,157)
					(시 2,700)
				○ 큰나무 조림	7,779,136 X 22ha = 171,141
					(국 86,469)
					(도 20,724)
					(시 63,948)
				○ 경관 조림	11,695,000 X 7ha = 81,865
					(국 41,367)
					(도 9,914)
					(시 30,584)
				○ 조림지 설계감리	239,280 X 171 = 40,917
					(국 28,642)
					(도 2,942)
					(시 9,333)
				○ 순천생태숲 조성(2차년도)	746,000,000 X 1식 = 746,000
					(균 373,000)
					(시 373,000)
				○ 순천자연휴양림 조성	
				ㅇ 휴양림조성사업	489,500,000 X 1식 = 489,500
					(균 342,250)
					(도 44,175)
					(시 103,075)
				ㅇ 휴양림조성 실시설계비	3,000,000,000 X 2.65/100 = 79,500
					(균 55,650)
					(도 7,155)
					(시 16,695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조림지사후관리(풀베기,칡덩굴제거)	
				399,336 X 1,983ha =	791,885
				(국	432,841)
				(도	85,922)
				(시	273,122)
				○ 보호수정비(이양사업) =	30,995
				(도	7,395)
				(시	23,600)
				○ 어린나무가꾸기 751,097 X 400ha =	300,439
				(국	169,660)
				(도	33,932)
				(시	96,847)
				○ 숲가꾸기 실시설계 60,429 X 2,500ha =	151,073
				(국	83,930)
				(도	16,786)
				(시	50,357)
				○ 숲가꾸기(간벌,천보,산물수집등) 919,675 X 1,100ha =	1,011,643
				(국	576,637)
				(도	111,281)
				(시	323,725)
				○ 순천생태숲조성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평가용역	
				50,000,000 X 1식 =	50,000
				(균	25,000)
				(시	25,000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	101,275	91,000	10,275	02 감리비		
				○ 숲가꾸기 감리비	40,510 X 2,500 =	101,275
					(국	56,264)
					(도	11,253)
					(시	33,758)
	95,863	47,669	48,194	03 시설부대비		
				○ 임도신설 추진부대비	118,000,000 X 0.84/100 =	970
					(균	776)
					(시	194)
				○ 임도구조개량 추진부대비	155,000,000 X 0.81/100 =	1,250
					(균	1,000)
					(시	250)
				○ 경제수일반조림 추진부대비	30,218 X 110ha =	3,324
					(국	2,326)
					(도	300)
					(시	698)
				○ 리기다갱신조림 추진부대비	30,027 X 215ha =	6,456
					(국	3,222)
					(도	960)
					(시	2,274)
				○ 수원함양조림 추진부대비	42,440 X 50ha =	2,122
					(국	1,485)
					(도	191)
					(시	446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	
				○ 큰나무조림 추진부대비	81,636 X 22ha =	1,796
					(시	1,796)
				○ 경관조림 추진부대비	124,000 X 7ha =	868
					(시	868)
				○ 순천생태숲조성 추진부대비	746,000,000 X 0.54/100 =	4,000
					(균	2,000)
					(시	2,000)
				○ 순천자연휴양림조성 추진부대비		
					572,000,000 X 0.53/100 =	3,000
					(균	2,100)
					(도	270)
					(시	630)
				○ 조림지사후관리 추진부대비	8,051 X 1,983ha =	15,965
					(국	15,965)
				○ 어린나무가꾸기	12,372 X 400ha =	4,949
					(시	4,949)
				○ 숲가꾸기	20,464 X 2,500ha =	51,163
					(시	51,163)
402 민간자본이전	3,508,529	3,391,981	116,548			
	2,190,418	3,391,981	△1,201,563	01 민간자본보조		
				○ 경제수일반 조림	909,090 X 110ha =	100,000
					(국	55,000)
					(도	10,000)
					(시	35,000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리기다갱신 조림	1,302,325 X 215ha = 280,000
					(국 175,000)
					(도 20,000)
					(시 85,000)
				○ 생태(맹아)조림	590,909 X 22ha = 13,000
					(국 10,000)
					(도 1,000)
					(시 2,000)
				○ 수원함양 조림	2,000,000 X 50ha = 100,000
					(국 50,000)
					(도 10,000)
					(시 40,000)
				○ 조림지 비료주기	208,133 X 30ha = 6,244
					(국 4,857)
					(도 416)
					(시 971)
				○ 산지특화작목(호도, 떫은감)육성	1,833,250 X 8ha = 14,666
					(국 7,333)
					(시 7,333)
				○ 산촌개발사업	700,000,000 X 1개소 = 700,000
					(균 490,000)
					(도 51,657)
					(시 158,343)
				○ 묘포지토양개량사업	3,800,000 X 3ha = 11,400
					(국 11,400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○ 화목겸용 보일러 설치	1,050,000 X 10대 = 10,500
					(국 7,500)
					(시 3,000)
				○ 표고재배사 시설	29,020 X 3,600㎡ X 40/100 = 41,790
					(국 20,895)
					(시 20,895)
				○ 밤작업로 시설	3,000,000 X 6㎞ X 40/100 = 7,200
					(국 3,600)
					(시 3,600)
				○ 밤나무 노령목 관리	1,290,855 X 193㏊ X 40/100 = 99,654
					(국 49,827)
					(시 49,827)
				○ 친환경밤 생산지원	10,051,000 X 35㏊ X 40/100 = 140,714
					(국 70,357)
					(시 70,357)
				○ 임산물생산단지 조성	25,128,210 X 39㏊ X 60/100 = 588,000
					(국 392,000)
					(시 196,000)
				○ 관상수 토양개량	4,750,000 X 3㏊ = 14,250
					(국 11,400)
					(시 2,850)
				○ 조경수 관정시설(중형)	6,000,000 X 3공 X 70/100 = 12,600
					(국 9,000)
					(시 3,600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				○ 임산물 표준출하	10,000,000 X 3개소 X 40/100 =	12,000
					(국	6,000)
					(도	1,200)
					(시	4,800)
				○ 임산물 저장시설	1,200,000 X 80㎡ X 40/100 =	38,400
					(국	19,200)
					(도	3,840)
					(시	15,360)
	1,318,111	0	1,318,111	02 민간대행사업비		
				○ 산림경영계획 작성	10,189 X 3,000ha =	30,567
					(국	15,284)
					(도	4,585)
					(시	10,698)
				○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	919,674 X 1,400ha =	1,287,544
					(국	728,694)
					(도	135,184)
					(시	423,666)
405 자산취득비	185,388	70,345	115,043			
	185,388	70,345	115,043	01 자산및물품취득비		
				○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	35,000,000 X 1식 =	35,000
					(국	10,500)
					(도	7,350)
					(시	17,150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				○ 산불진화 차량	50,000,000 X 1대 =	50,000
					(국	15,000)
					(도	10,500)
					(시	24,500)
				○ 무선국(간이국)시설	10,000,000 X 1식 =	10,000
					(국	3,000)
					(도	2,100)
					(시	4,900)
				○ 목재파쇄기	48,000,000 X 1대 =	48,000
					(국	24,000)
					(도	7,200)
					(시	16,800)
				○ 산림지리정보(FGIS) 시스템구축	28,100,000 X 1조 =	28,100
					(국	8,430)
					(도	5,901)
					(시	13,769)
				○ 산불예방 무인방송 기기	13,000,000 X 1식 =	13,000
					(도	3,900)
					(시	9,100)
				○ 통계환경 전산장비 구입	1,288,000 X 1대 =	1,288
					(국	1,288)
220 자체사업	775,000	405,000	370,000			
206 재료비	80,000	50,000	30,000			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		
	80,000	50,000	30,000	00 재료비		
				○ 재료비 총액	=	80,000
308 자치단체 등 이전	241,470	210,000	31,470			
	241,470	210,000	31,470	05 자치단체간 부담금		
				○ 사방사업 시비부담금		
				ㅇ 사방댐	37,710,000 X 2개소 =	75,420
				ㅇ 사방댐준설	1,050,000 X 1개소 =	1,050
				ㅇ 산림유역관리 설계	15,000,000 X 1개소 =	15,000
				○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	150,000,000 X 1대 =	150,000
401 시설비및부대비	80,000	32,000	48,000			
	79,495	32,000	47,495	01 시설비		
				○ 태풍등 재해위험 수목정비	2,000,000 X 10개소 =	20,000
				○ 고동산 철쭉단지 조성	10,000,000 X 1개소 =	10,000
				○ 시가지주변 임도편익시설 및 쉼터조성		
				ㅇ 시설비	47,000,000 X 1식 =	47,000
				ㅇ 실시설계비	47,000,000 X 5.31/100 =	2,495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505	0	505	03 시설부대비 ○ 시가지주변 임도편익시설 및 쉼터조성 47,000,000 X 1.08/100 = 505
402 민간자본이전	373,530	113,000	260,530	
	373,530	113,000	260,530	01 민간자본보조 ○ 밤나무 해충구제 유아등 설치지원 2,700,000 X 193.5ha X 60/100 = 313,530 ○ 산지웰빙 특화작목 지원 15,000,000 X 4ha = 60,000